

「서울특별시 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이소라 의원 대표발의)

□ 기후환경본부장 권 민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교육위원회 이소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의안번호 제2988호,
「서울특별시 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은
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 유발
생활소음·진동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,
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
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.

□ 다만, 개인 유발 생활소음·진동의
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,
주거공간 내 모든 소음·진동에 대한
일률적·개별적 관리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,
이를 강제할 법적·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
민원 처리 등을 위한 관리 방안 역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.

□ 또한, 법령에 없는
개인 생활 공간의 행위까지 조례로 규정할 경우
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,
「서울특별시 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은 향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

□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